

# 2012년 개정 세법 살펴보기



## 미래에셋이 전하는 절세 비법

홍경호 세무사

-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VIP고객 전담)
- 한국경제TV, 이머징 인베스터, 월간 공무원연금, 아시아인베스트먼트 골드메이커 등 세무칼럼 기고
- 공저 <미래에셋 절세 가이드>
- hongtax@miraeasset.com

지난해 12월31일 최고 세율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2년 세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손본 데 이어 시행규칙도 개정 법령에 따라 고칠 예정이지만 큰 줄기는 이미 정해진 셈이다. 2012년부터 바뀌는 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 다주택 장기보유 공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개정 사항으로는 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신설과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꼽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발표한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소득세율은 작년과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던 당초 개정안과 달리 추가로 최고 구간을 신설해 과세표준(과표)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들은 올해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 나게 됐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 과표가 4억 원인 경우 작년까지는 1억 2천50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억 2천8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늘어난다. 실제로 연간 종합소득 과표가 3억 원을 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부동산 등을 처분해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에

는 불이익이 곧장 닥친다. 특히 당초 개정안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양도시기를 미뤄 왔던 다주택자들은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고 세율구간 신설로 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의한 세금 감면 효과가 훨씬 더 크므로 결과적으로는 이익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 연 3%씩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는 제도다. 예컨대 2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주택 한 채를 팔면서 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작년까지는 1억7천50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금년에는 장기보유공제 혜택 덕분에 세금이 1억1천74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다만 과표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결국 1억1천900만 원이 된다. 작년에 비해 5천60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 주택 취득세 부담 증가

다만 취득세 부담은 늘어난다. 작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주택 유상 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12년 말로 연장되기는 했지만 감면 폭이 지난해 3월22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75%에서 50%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나 9억 원 초과 주택 취득자에 대한 50% 감면 혜택도 없어졌다.

### 성실 신고 확인제도 도입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 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2011년 귀속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을 신고할 때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성실 신고 확인자에게 확인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도 소매업 30억 원, 제조·숙박·음식업 15억 원, 부동산임



최고 세율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의한 세금 감면 효과가 더 크다. 사진\_박지호 기자

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 7억5천만 원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에 포함된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되면 성실 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해 2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성실 신고 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실 신고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말에서 6월 말로 1개월 연장되고 성실 신고 확인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 원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반면 성실 신고 대상자가 성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해외 펀드 손실상계 연장

해외 펀드 손실 상계는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2010년부터 과세 전환된 이후 여전히 세계 경제 불황으로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손실 상계란 비과세기간(2007년 6월~2009년 12월)에 발생한 손실분을 과세 전환 이후에 발생한 이익에서 상계해 주는 것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

이다. 따라서 올해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예전 손실분과 상계가 가능하므로 펀드 환매를 고민하는 투자자는 환매시기를 잘 따져 봐야 할 것이다.

### 가업 승계 상속공제제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승계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당초 개정안에 제시됐던 공제율 100%, 공제한도 500억 원 보다는 다소 축소됐지만 가업 상속재산 총액에 대한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70%로 확대되고 공제 한도도 10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까지 커진다.

### 월세 소득공제 요건 완화

월세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돼 더 많은 직장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작년까지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독신 직장인도 월세지급액의 40%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